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편 집 :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
전화 75 - 7834
인 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 - 6090

제 577 호

1976.10.18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1067 호 : 서울특별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 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3

제 1068 호 : 서울특별시고등학교학군설정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 4

제 1069 호 : 서울특별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환지지시추량 대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6

◎ 고 시

제 263 호 : 주택개량을위한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예정지 지정고시 ····· 6

제 264 호 : 동청사 위치변경 ····· 7

제 265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 7

제 266 호 : 임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허가 ····· 8

제 267 호 : 도시계획시설 (지하도) 변경결정및지적승인 ··· 9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1000

제 268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일부변경승인 ····· 10
제 269 호 : 주택개량을위한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및확지예정지
지정고시 ····· 10
제 270호 :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및지적승인 ····· 11
공 고
제 242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 11
제 243 호 :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일부변경공람공고 (시흥지구) ····· 13
제 244 호 : 환지계획변경인가및예정지지정공고 ····· 14
제 245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 14
제 246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 16
제 247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 17
제 250 호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업체지정및취소공고 ····· 18
제 251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 18
제 252 호 : 주택개량재개발사업건축계획공람공고 ····· 23
제 40호 (강남구 공고) : 청사이전공고 ····· 23
예 규
제 337 호 : 서울특별시 폐비지관리및처분규정중개정규정 ····· 23
사 령 ····· 25

조　　례

◎서울특별시조례제 1067호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중학교 무시험입학추첨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6. 10. 19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하점생 인

서울특별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 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학교군) ①학교군 및 중학구수는 10학군과 1학구로 하고, 학교군·중학구별 국민학교 및 중학교는 별표와 같다.

②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7학년도 개시일 부터 시행한다.

〈별　　표〉

1. 학군 변경 중학교

학교명	현 학군	변경 학군	비고
신천중	3 학군	4 학군	

2. 추가 중학교

학교명	학군	비고
진선여중	5 학군	
양석여중	4 학군	

◎ 서울특별시조례제 1068호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학군설정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6. 10. 19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하점생 인

서울특별시고등학교학군설정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학군설정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학군) ①학군은 후기학교의 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1개의 공동학군과 7개의 일반학군"을 둔다.

②학군별 고등학교와 그에 속하는 중학교는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1977학년도 개시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1. 학군 변경 고등학교

가. 남 자

학교명	현 학군	변경 학군	비고
경 동 고	공동학군	1, 2 학군	
배 명 고	〃	2, 3 〃	
성 동 고	〃	2, 3 〃	
숭 문 고	〃	5 〃	
이 대 부 고	〃	5 〃	
장 충 고	〃	3 〃	
용 익 고	〃	1 〃	
오 산 고	3, 4 학군	4 〃	
관 악 고	4 〃	7 〃	
성 남 고	4 〃	7 〃	
여 의 도 고	4, 5 〃	7 〃	
장 훈 고	4 〃	〃	

나. 여 자

학 교 명	현 학 군	변경학군	비 고
금 란 여 고	공 동 학군	5 학 군	
보 성 여 고	〃	4 학 군	
서 울 여 고	〃	5, 7 〃	
상명사대부여고	〃	1, 6 〃	
신 광 여 고	〃	4, 7 〃	
이 대 부 여 고	〃	5 〃	
상 명 여 고	4 학 군	4, 7 〃	
영 등 포 여 고	4 〃	7 〃	
명 지 여 고	5, 6 〃	6 〃	

2. 고등학교 학군소속 변경중학교

학 교 명		현소속고교학군	변경고교학군	비 고
남 자	여 자			
장 훈	봉 영	4 학 군	7 학 군	
영 도	영 등 포			
당 산	한 강			
동 일	문 일			
강 서	동 일			
유 한	강 서			
공 항	화 곡			
여 의 도	오 류			
	여 의 도			
	대 림			

3. 추가 고등학교

학 교 명	학 군	비 고
진 선 여 고	3 학 군	

4. 추가 중학교

고교학군	교명	비고
3 학 군	진 선 여 중	
3 학 군	양 석 여 중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환지지시 측량대행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6 년 10 월 18 일

◎ 서 울 특 별 시 조 례 제 1069 호

서울특별시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환지지시측량대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환지지시측량대행에 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를 다음과 같이 한다.

환 지 지 시 측 량 대 행 수 수 료

구 분	수 수 료 액	비 고
1 - 20 필지 까지	필지당 4,000 원	1 필지의 면적은 300 평을 기준하고, 300 평초과시마다 기준수수료액의 10 % 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가산한다.
21-50 필지까지의 20필지초과분	〃 1,500 원	
50 필지초과분	〃 800 원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행업자에게 신청되어있는 사안에 대한 측량수수료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고 시

◎ 서 울 특 별 시 고 시 제 263 호

주택개량을위한재개발사업관리처분 계획인가및예정지지정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제 224 호 (76.9. 11) 로 관리처분 계획공람한바 있는 아현제 2 구역 일부, 옥수 5 구역 일부 및 미아 3 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 41 조, 제 86 조 및 도 지 구 획 정 리 사 업 법

제 56조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조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하고 인가에 따른 예정지를 지정하였기 이를 지정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주택국 주택개량과 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3. 본고시에 대한 서류송달은 토지 및 건물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할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본고시로 대신함을 알린다.

1976.10. .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고시 제 264 호

동 청 사 위 치 변 경

다음과 같이 동청사의 위치가 변경되었기 고시한다.

1976.10.5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다　　음

동 명	위 치 변 경 내 용		이전일자	비 고
	이 전 전	이 전 후		
강남구잠원동	강남구잠원동 134-28호	강남구반포동 92-1-3우력	76.10.5	

◎서울특별시고시 제 265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 시 계 획 인 가

1. 건설부고시제 8 호 (76.1.21) 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도로)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와 동법 제 26 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4.4)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

2. 관계도서는 종로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10. .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시행의위치 : 종로구도렴지구 (세종로동, 도렴동,당주동)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렴지구 (세종로동154의2~당주동128의1간) 도로개설공사
3. 사업규모 :
   B=15m L=171m (세종로동)
   B=15m L=144m (당수동)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착수 및 준공예정일 :
   1976.9 -1977.12.31
6. 사용또는 수용할재산의 소재지 : 별첨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성명 : 별첨 토지조서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266 호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제218호 (76.9.6로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된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24조 및 제25조와 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의하여 시행허가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토목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하다.

1976.10.16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시행지 : 관악구 신림동 273의154 권
2) 사업의종류 및 명칭 :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동방생명단지
3) 시행면적 : 210,975㎡ (63,820평)
4) 시행자의 주소, 성명 : 시내 중구 태평로2가 250번지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 원 종 훈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착공: 76.10. .
준공: 78.10.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생략) 별첨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생략) 별첨
8) 허가내용: 별첨허가도서 (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267 호

도시계획시설 (지하도)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1.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 (지하도)을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와 행정권한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도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10.16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시설 (지하도) 변경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규모	면적(㎡)	비고
기정	방산시장앞지하도	중구 방산동 4 - 11앞	25m × 36m	1,049.2	
변경	〃	〃	36 ×46.2	1,966.6	
기정	구내무부앞지하도	중구을지로2가 197	10.2-25.4x72	1,490	
변경	〃	〃	20.2 × 75	1,868.3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268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 일부변경승인

1. 건설부고시제 375 호 (71.6.25)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하여 지적일부변경사유가 있어 변경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10.20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지적일부변경조서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m	m			
기정	중로	1 류	142	20	70	마포구구수동 57-3	마포구 장전동 150-10	
변경	중로	1 류	142	20	70	〃	〃	시공선에 맞추어 변경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269 호

주택개량을위한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및환지예정지지정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제 224 호 (76.9.11)로 관리처분계획공람한바 있는 옥수 3 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 41 조 제 86 조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6 조와 행정권한위임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 25 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인가에 따른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였기 이를 지정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주택국 주택개량과 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3. 본 고시에 대한 서류송달은 토지 및 건물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본 고시로 대신함을 알린다.

1976.10.21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고시제270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 및 지적승인

1.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123호(73.4.4)의 권한 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10.21.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주차장 결정조서

위　　치	면　　적	비　　고
영등포구목동406-10	3,651㎡ (1,076평)	공부공수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24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177호(62.12.8)로 고시된 용산제1·2우수지 주변정비공사 구간내의 저촉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2. 관계도서는 용산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10.5

서 울 특 별 시 장

<공 람 개 요>

1. 사업장위치 : 용산글다리~옥천간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 용산제1·2 유수지 주변정비공사
3. 사업의 규모 : B=20m, L=300m
4.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사업착수및준공예정 : 1976.9.25~1977.12.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토지조서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 주소·성명 : 다음

토 지 조 서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1	한강로3가	8	제방	46.3	좌		동		국
2	〃	8-1	철도용지	30		〃			국
3	〃	8-2	제방	129.6		〃			국
4	〃	8-3	철도용지	25.1		〃			국
5	〃	12	구거	600		〃			국
6	〃	6-3	철도용지	230.1		〃			국
7	〃	11	구거	4		〃			국
8	〃	10	구거	40		〃			국
9	〃	9	철도용지	54.6		〃			국
10	한강로2가	17-4	유지	49.7		〃			국
	계			1,209.4					

건 물 조 서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유자	
		지번	구조	건평	지번	구조	건평	주소	성명
14	한강로3가	40	목조세와	16.96				한강로3가 40	김입동
15	〃	40-1	목조와즙	27.47				〃 40-1	마홍규
16	〃	8-2	〃	27.30				〃 8-2	황성인
17	〃	40	〃	10.66				〃 40	황기송
18	〃	40	〃	38.00				〃	김교완
19	〃	40	〃	17.11				〃	김지관
20	〃	40	〃	9.33				〃	서경모
21	〃	40	목조세와	7.33				〃 40-384	송율순
22	〃	40-1	세부세와	10.00				〃 40	김현갑
23	〃	40	목조와즙	13.71				〃	김송옥
24	〃	40	〃	12.00				〃	김기석
25	〃	40	〃	17				〃	이인노
	계			207.08					

◎서울특별시공고제243호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일부
변경공람공고(시흥지구)

1. 건설부공고 제8호(68.1.23)로 실시계획 인가되어 당시가 시행하고 있는 시흥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사업계획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토지구획정리사업 제14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공람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당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시키며, 시장 공지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에게는 별도 통지할 것이나 통지를 받지못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이 공고로서 갈음한다.

서울 강

가. 사업계획 변경조서

지구명	위치	면적(평)	변경내용		비고
			변경전	변경후	
시흥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영등포구독산동110구획	824.10	시장용지	일반용지(110-2)	

첨부 : 관계도면 (생략 :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 보관)

◎ 서울특별시공고제 244 호

환지계획변경인가및 예정지지정공고

1. 서울특별시공고 제 190 호 (76.8.18)로 환지계획 변경 공람공고한 영등(제 1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5 조와 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제 11 항 3 호에 의거 환지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동법 제 5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변경하였기 이를 공고한다.
2. 환지예정지 변경지정도서는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와 강남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에 공한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공고사항을 서면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76. 10. .

서 울 특 별 시 장

<환지계획일부변경인가및예정지지정내역>

가. 사 업 명 : 영등(제 1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나. 변경면적 : 53,970.8 평

다. 변경위치 : 강남구반포동 269 번지 외 필지 (2-88 구획, 310-317 구획, 320-332 구획)

◎ 서울특별시공고제 245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 581 호 (69.9.30)로 고시된 청계천 (제 2 청계교~마장교간) 제 4 차 복개공사 구간내의 저촉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 10. 13

서 울 특 별 시 장

<공 람 개 요>

1. 사업장 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청계천변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청계천 (제2청계교-마장교간) 복개 제4차공사

3. 사업의 규모:

가. B = 14.5 m

나. L = 600 m

4. 사업의 시행자: 서울특별시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76.10.30 ~ 77.12.31

6. 사용 또는 수굴할 토지: 별첨 토지조서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관서인 주소 성명: 별첨

1. 토지조서

공사명: 청계천 (제2청계교~마장교간) 복개 제4차공사

순위	위치	지적	지목	소유자
1	성동구홍익동 596 번지	1,263.4	제방	국유지
2	홍익동 612	4,577.6	하천	〃
3	홍익동 595	68.3	도로	서울특별시
4	성동구마장동 610	237	하천	국유지
5	마장동 527		제방	〃

2. 건물조서: 해당없음.

◎ 서울특별시공고제24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8호(76.1.21)로 고시된 소공동 가각정비 공사구간 내외 저촉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2. 관계도서는 중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3.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서는 이 공고로 가름합니다.

1976. 10. 13

서 울 특 별 시 장

<공 람 개 요>

1. 사업장 위치: 소공동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소공동 가각정비공사
3. 사업의 규모: 면적 19.9평
4. 사업의 시행자: 서울특별시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76.10.30 ~ 76.12.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별첨 토지조서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다음

토 지 이 동 지 조 서

토지소재		원				현				소 유 자	
구	동	지번	지목	지적	등급	지번	지목	지적	등급	주 소	성 명
중	소공	86-10	대	0.3	89					86-1	권병대 외 2인
중	소공	86-1	대	18.8	89					86-1 신문로1가 161	권병진 권병각
중	소공	86-9	대	0.8	89					〃	〃

◎서울특별시공고제24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177호(62.12.8)로 고시된 남대문로3가 도로확장공사 구간내의 저촉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2. 관계도서는 중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 10.13

서 울 특 별 시 장

〈공 람 개 요〉

1. 사업장 위치 : 남대문로3가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 남대문로 3가 도로확장공사
3. 사업의 규모 : 가. B = 35 m
   나. L = 50 m
4.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
   76.10.30 ~ 77.12.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 토지조서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 다음

이 동 지 조 서

토지소재		원				현				소 유 자	
구	동	지번	지목	지적	등급	지번	지목	지적	등급	주 소	성 명
중	남대문3가	26-1	도로	13.6						북창동 109의2	강재순
〃	〃	26-2	〃	14.6						한남동725의74	최기홍
〃	〃	24-2	〃	10.3						종로2가 50	전수용
〃	〃	24-1	〃	10.3						남창동 2의 3	기영약품주식회사
〃	〃	23-1	〃	14.7						〃	〃
〃	〃	25-1	〃	18.5						25	김서기
〃	〃	27-1	〃	29.1						27	조명숙

○ 서울특별시공고제 250 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 지정업체지정및취소공고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업체 지정요령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수출품 생산지정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 및 취소하였기 동 요령 제4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76. 10. .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업체

지정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수출품명	76년도 수출목표액	비 고
485	(주)엘레판트	김경열	성동구성수동 2 가 19-15	가 방	$ 723,440	

2. 지정취소업체

지정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수출품명	취소사유
505	일진용단기 공업사	김성환	성북구 길음동 577-137	가스용단기	경기도로 이전

◎ 서울특별시공고제 251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 177 호 (62.12.8) 로 고시된 수문회관앞 도로확장공사 구간내의 저촉되는 토지의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2. 관계도서는 종로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연번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57	경운동 89-6	대	2.2		국유	
58	〃 90-17	〃	250.8		〃	
59	〃 91-3	〃	56.0		김광균	
60	〃 91-7	〃	90.9		〃	
61	〃 91-4	〃	133.0		국유	
62	〃 96-8	〃	14.1		〃	
63	〃 96-19	〃	10.6		〃	
64	〃 92	〃	62.0		이봉준	
65	〃 96-4	〃	56.5		박용준	
66	〃 93-2	〃	35.9		조진선	
67	〃 96-3	〃	37.1		차외양	
68	〃 94-4	〃	0.1		국유	
69	운니동 114-28	〃	54.6	운니동 114	김동헌	
70	〃 114-29	〃	14.5	〃	김승현	
71	〃 114-30	〃	329.7	〃	이청	
72	〃 114-27	〃	74.4		덕성학원	
73	경운동 2-5	〃	30.3		서울시	
74	〃 2-3	도로	7.0		〃	
75	〃 2-6	대	1.3		〃	
76	〃 2-7	〃	0.5		〃	

연번	지 번	지목	지 적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비 고
11	경운동 47-7	대	4.8		김광순	
12	〃 47-16	〃	2.3	경운동 47-16	윤병열	
13	〃 47-11	〃	16.0	〃 47-11	장용식	
14	〃 45-2	〃	15.0	〃 45-2	이희만	
15	〃 45-1	〃	42.0		국 유	
16	〃 47-10	〃	13.4		건국대학원	
17	〃 48-2	〃	19.0	경운동 48	이순길	
18	〃 48-1	〃	19.0	〃	한경훈	
19	〃 43	〃	20.0		국 유	
20	〃 44	〃	18.0		〃	
21	〃 64-57	〃	24.4		건국대학원	
22	〃 49	〃	39.3	경운동 49	김태순	
23	〃 42	〃	29.0		국 유	
24	〃 42-1	〃	3.9		〃	
25	〃 53-1	〃	5.8		백순봉	
26	〃 52-1	〃	3.3		국 유	
27	〃 53	〃	14.0		백순봉	
28	〃 52	〃	24.0		국 유	
29	〃 50	〃	34.0		〃	
30	〃 54	〃	16.0		〃	
31	〃 65-3	〃	3.0		〃	
32	〃 51	〃	9.0		〃	
33	〃 55	〃	14.0	경운동 55	한인길	

연번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비고
34	경운동 56	대	20.0		국유	
35	〃 55-1	〃	83.0		서울시	
36	〃 63-15	〃	15.8		국유	
37	〃 58-2	〃	12.0		〃	
38	〃 57	〃	20.0		최병교	
39	〃 63-14	〃	2.4		국유	
40	〃 62-5	〃	5.0	경운동 71	민병도	
41	〃 59	〃	24.0	〃 59	김능윤	
42	〃 58-1	〃	22.0		국유	
43	〃 62-8	〃	10.2	경운동 71	민병도	
44	〃 62-3	〃	22.0	〃	〃	
45	〃 60	〃	46.0	경운동 60	신해관	
46	〃 62-6	〃	31.0	〃 74	민병도	
47	〃 62-7	〃	1.0	〃	〃	
48	〃 61-1	〃	17.0	경운동 61-1	조근영	
49	〃 61-2	〃	25.0	〃 61-2	유일협	
50	〃 71	〃	300.3	〃 71	민병도	
51	〃 72	〃	21.0		국유	
52	〃 74-2	〃	52.0	경운동 74	성기덕 외 2인	
53	〃 73	〃	27.0		국유	
54	〃 75	〃	31.0		〃	
55	〃 88-3	〃	301.0		천도교 재단	
56	〃 89-2	〃	248		국유	

연번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57	경운동 89-6	대	2.2		국유	
58	〃 90-17	〃	250.8		〃	
59	〃 91-3	〃	56.0		김광균	
60	〃 91-7	〃	90.9		〃	
61	〃 91-4	〃	133.0		국유	
62	〃 96-8	〃	14.1		〃	
63	〃 96-19	〃	10.6		〃	
64	〃 92	〃	62.0		이봉준	
65	〃 96-4	〃	56.5		박용준	
66	〃 93-2	〃	35.9		조진선	
67	〃 96-3	〃	37.1		차외양	
68	〃 94-4	〃	0.1		국유	
69	운니동 114-28	〃	54.6	운니동 114	김동헌	
70	〃 114-29	〃	14.5	〃	김승현	
71	〃 114-30	〃	329.7	〃	이청	
72	〃 114-27	〃	74.4		덕성학원	
73	경운동 2-5	〃	30.3		서울시	
74	〃 2-3	도로	7.0		〃	
75	〃 2-6	대	1.3		〃	
76	〃 2-7	〃	0.5		〃	

◎서울특별시공고제 252 호

주택개량재개발사업건축
계획공람공고

1 . 건설부고시 제 145 호 (74.5.13) 제 136 호 (75.8.25)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212 호 (76.9.4) 로 사업실시 인가된 당시의 76 시행주택개량 재개발사업지구인 아현 2 일부 옥수 3 및 미아 3 동 3 개구역에 대하여 주택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 4 조 및 건축법 제 33 조의 2 규정에 따라 작성된 건축계획을 건축법 시행령 제 152 조제 3 항에 의거 공고일로 부터 14 일간 사업구역내 토지건물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공람합니다.

2 . 상기건축 계획서는 당시 주택국 주택개량과에 비치되어 있으며 본 공고에 대한 개별서류 송달은 이 공고로 가름 합니다.

1976.10. .

서 울 특 별 시 장

◎강남구청 공고제 40 호

청 사 이 전 공 고

관하 잠원동 사무소를 다음과 같이 이전하였기 공고한다.

1976.10. 5

강 남 구 청 장

다 음

1 . 신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잠원동 134-28

2 . 이전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반포동 92 부력 1-3

3 . 이전일자 ; 76.10. 5

예 규

◎서울특별시예규제 337 호

서울특별시체비지관리 및
처분규정중 개정규정

서울특별시 체비지관리 및 처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7 조중 "시유재산심의회" 를 "공유재산심의회" 로 한다.

제 9 조 제 1 항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 88 조"를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 91 조"로 한다.

제10조 제 2 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제 3 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 12 조 제 1 항중 제 3 호 내지 제 5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 2 항중제 1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 용도가 시작으로 지정된 용지를 매각하고자 할때에는 매수예정자 (이하 "매수자"라 한다)와 먼저 가계약 (별지제 37 호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시장시설보증금으로 매각금액의 1 할 이상을 관할구청장에게 예치토록 한다.

4 . 본 계약은 가계약 체결후 매수자가 법인 등기부등본 및 시설보증금 납부필증 (별지 제 36 호서식)과 제 1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체결하고 본 계약 (별지제 38 호서식)이 체결되면 계약내용을 산업국장 (참조 상정과장)에게 통지한다.

5 . 기타 용도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제 3 호 및 제 4 호에 준하여 처리한다.

1 . 2 회이상 공매에서 유찰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할때에는 재산공람대장을 비치하고 수시 공람케하되 매수 희망자가 있을 때에는 매수신청서 (별지매수신청서 별지제 33 호서식)에 견적서 (별지 제 34 호서식)및 견적보증금 납부서 (견적액의 1 할 이상을 한국상업은행 태평로지점에 예치한 예치증)첨부 제출케 한다.

2 인이상 견적서 제출자중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액을 견적하는 자에게 매각한다.

제 14 조 제 1 항 제 1 호중 "제 12 조 2 의 3 에"를 "제 12 조제 2 항제 3 호"에로 동항 제 4 호중 "각항"을 "각호"로 동조 제 2 항 제 2 호중 "전항"을 "제 1 호"로 동조 제 3 항제 2 호중 "전항"을 "제 1 호"로 동항제 2 호 다음에 3 호와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연부로 계약한자가 계약일로부터 60일내에 대금을 일시로 전액 납부할 때는 일시불 계약에 준하여 2할 공제한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4. 전 각항의 대금 징수순위는 연체이자, 이자, 매각대금 순위로 징수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1. 매수자가 실종 또는 사망하였을 때

2. 구획정리사업의 미완료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 절차가 불가능할 때

3. 연부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

4. 제8조제2항제2호 나 목에 의한 토지를 전 각호의 사유로 주무부장관의 명의변경 동의가 있을 때

부　　칙

이 규정은 1976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사　　령

◎ 1976.10. 3

영등포구 지방행정주사 [illegible] 전 지방행정주사에 [illegible]

◎ 1976.10. [illegible]

[illegible] 사망으로 [illegible]

◎ 1976.10.14

도봉구 지방행정주사 유기탁 기획담당관 근무를 명함.

아동과 지방행정주사 구영숙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

부녀과 지방행정주사 안 희 옥
아동과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주사 정 진 순
부녀과 근무를 명함.

소녀직업보도소 지방행정주사 주 무 경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종 로 구 지방행정주사시보 이 종 애
소녀직업보도소 파견근무를 명함.
(76.10.15 ~ 77.1.14)

북도수원지사무소 지방토목기사 안 희 태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그직을 면함(정년퇴직)

◎ 1976.10.15

성 동 구 지방간호보건소 기원보 이 금 순
도봉구 보건소 근무를 명함

아동병원 지방간호기사보 성 분 순
중구 보건소 근무를 명함.

아동병원 지방간호기사보 신 숭 수
동대문구 보건소 근무를 명함

아동병원 지방간호기사보 이 성 희
용산구 보건소 근무를 명함.

아동병원 지방간호기원 오 명 례
용산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정신병원 지방약무기원 박 규 용
강남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서대문병원 지방보건기원보 김 덕 순
서대문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동부병원 지방보건기사보 오 창 섭
관악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종 로 구 지방보건보건소 기사보 정 필 성
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

관 악 구 지방지적기사보 김 외 구
천호출장소 근무를 명함.

중 구 지적기사보 장 관 진
용산구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적기원 김 희 영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적기원 태 재 선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성 북 구 지적기사보 송 오 복
관악구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지적 기원 최 종 수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관 악 구 지적기원 윤 승 원
세정과 근무를 명함.

남부건설 사업소 지방토목 기사보 김 도 현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 1976.10.18

지방보건연구사보시보 우 숙 희
초임호봉을 급함.
보건연구소 근무를 명함.

지방약무 기원보시보 강 성 훈
초임호봉을 급함.
동대문보건소 근무를 명함.

지방약무 기원보시보 김 상 대
초임호봉을 급함.
강남보건소 근무를 명함.

지방약무 기원보시보 홍 승 희
초임호봉을 급함.
도봉보건소 근무를 명함

지방보건(X) 기원보시보 김 신 화
초임호봉을 급함.
성동보건소 근무를 명함.

지방보건(X) 기원보시보 이 경 수
초임호봉을 급함.
중 부 병 원 근무를 명함.

지방보건(병리) 기원보시보 김 경 순
초임호봉을 급함.
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

지방보건(병리) 기원보시보 이 [illegible]
초임호봉을 급함.
종로보건소 근무를 명함.

지방보건(병리) 기원보시보 이 [illegible]
초임호봉을 급함.
성동보건소 근무를 명함.

지방보건(병리) 기원보시보 장 [illegible]
초임호봉을 급함.
도봉보건소 근무를 명함.

지방보건(병리) 기원보시보 [illegible]
초임호봉을 급함.
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

지방간호 기원보시보 박 미 [illegible]
초임호봉을 급함.
아 동 병 원 근무를 명함.

지방간호 기원보시보 홍 혜 숙
초임호봉을 급함.
[illegible] 병 원 근무를 명함.

지방간호 기원보시보 서 수 애
초임호봉을 급함.
서대문병원근무를 명함.

지방간호 기원보시보 김 명 자
초임호봉을 급함.
아동병원 근무를 명함.

지방간호 기원보시보 윤 용 수
초임호봉을 급함.
아동병원 근무를 명함.

지방간호 기원보시보 이 난 자
초임호봉을 급함.
아동병원 근무를 명함.

지방간호 기원보시보 김 창 선
초임호봉을 급함.
아동병원 근무를 명함.

지방지적 기원보시보 손 병 용
초임호봉을 급함.
관 악 구 근무를 명함.

지방지적 기원보시보 백 순 흠
초임호봉을 급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지방지적 기원보시보 이 조 웅
초임호봉을 급함.
강 남 근무를 명함.

지방지적 기원보시보 이 병 수
초임호봉을 급함.
동 대 문 근무를 명함.

지방지적 기원보시보 김 중 혁
초임호봉을 급함.
도 봉 구 근무를 명함.

지방지적 기원보시보 박 윤 환
초임호봉을 급함.
은평출장소 근무를 명함.

지방지적 기원보시보 변 우 창
초임호봉을 급함.
성 북 구 근무를 명함.

지방지적 기원보시보 허 인 희
초임호봉을 급함.
성 동 구 근무를 명함.

지방지적 기원보시보 성 덕 수
초임호봉을 급함.
관 악 구 근무를 명함.

지방지적 기원보시보 임 재 훈
초임호봉을 급함.
성 북 구 근무를 명함.

지방지적 기원보시보 이 진 성
초임호봉을 급함.
천호출장소 근무를 명함.

지방지적 기원보시보 이 문 수

초임호봉을 급함.

성 북 구 근무를 명함.

지방지적 기원보시보 이 형 원

초임호봉을 급함.

관 악 구 근무를 명함.

지방지적 기원보시보 김 명 학

초임호봉을 급함.

종 로 구 근무를 명함.

지방지적 기원보시보 [illegible] 윤 구

초임호봉을 급함.

중 구 근무를 명함.

지방지적 기원보시보 최 인 영

초임호봉을 급함.

성 동 구 근무를 명함.

지방지적 기원보시보 최 영 은

초임호봉을 급함.

중 구 근무를 명함.

지방지적 기원보시보 남 영 표

초임호봉을 급함.

마 포 구 근무를 명함.

지방지적 기원보시보 안 성 길

초임호봉을 급함.

강 남 구 근무를 명함.

지방지적 기원보시보 [illegible] 지 [illegible]

초임호봉을 급함.

강 남 구 근무를 명함.

지방지적 기원보시보 박 [illegible] 식

초임호봉을 급함.

서 대 문 구 근무를 명함.

서 울 특 별 시 장